

보도시점 2026. 9. 16.(수) 09:00 배포 2026. 9. 16.(수) 08:00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 도입

-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의 역외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9.16일 개정
-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과 함께,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원화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여 「원화국제화 로드맵」 차질없이 추진

재정경제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재경부고시, 이하 ‘RFI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재경부고시) 개정안을 9.16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8.24일~9.3일)를 통해 관계기관·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다.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인 「원화국제화 로드맵」에서 발표(7.19일)한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화 관련 외국환업무로서 ‘해외원화업무’ 및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을 제도화하고, 등록·변경·폐지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였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for KRW Business** ☞ 기존 RFI에 대한 원화전문 라이선스

동 고시 개정안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 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외 원화결제가 가능해진다. 단, 고객의 범위는 외국인 비거주자(은행 등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로 한정된다.

또한,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Overdraft)을 제한 없이 허용하여 결제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비거주자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국내 부동산 거래는 제외)하여 비거주자의 자유로운 원화거래를 지원한다.

한편,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역외 원화거래기관으로서 거래상대방인 고객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 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해외외국환 업무취급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무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등과 함께 거래 내역 및 의무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책임자	과 장	백누리 (044-215-4750)
		담당자	사무관	류성열 sung126126@korea.kr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민규 (02-759-5737)
		담당자	과 장	김성기 sk.kim@bok.or.kr



- ① **(정의)**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역외에서 원화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해외원화업무는 외국환업무의 일환으로 정의(☞외국환거래법 적용)
- ② **(등록)**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중 원화업무를 하려는 기관은 재경부에 별도 등록 ☞ FX업무를 하는 RFI의 원화전문 라이선스
 - * ①기존 RFI 등록증(RFI와 동시에 등록 신청시에는 신청서) ②통합원화계좌 정보
- ③ **(업무 범위)** 역외에서 비거주자가 원화 지급·수령, 예금 등 원화의 보유·조달·운용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 설정
 - RFI-K는 비거주자(국민, 은행 제외)를 고객으로 원화계좌를 개설, 송금·투자·대차거래 등 수행 ☞ 자유로운 원화거래 지원(자본거래신고 면제)
 - RFI-K는 원화거래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 하고 동 은행이 한은원화국제결제망에 접속 ☞ 역외 원화결제 허용
 -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overdraft)을 제한 없이 허용
 - ☞ 비거주자의 원화 결제 리스크 최소화
- ④ **(유동성 특례)** 원화 차입 신고 기준 완화(신고면제 기준: 300→1,000억원)
- ⑤ **(의무)** 고객에 대한 확인 및 원화 거래 내역 사후보고
 -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고객이 비거주자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월별 거래내역 정보*를 사후적으로 한은에 보고할 의무
 - * 수취·지급인에 대한 식별정보, 거래금액, 통화종류, 거래·결제일자 등
- ⑥ **(건전성 관리)**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원화자금 조달 및 운용방법과 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대해 필요시 제한 가능한 근거 마련